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7. 12 선고 2022가단1117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7. 12.

주 문

1. 피고와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. 5. 31.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16,389,3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6,389,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성환

별지